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2415
----------	-------

발의연월일 : 2025. 8. 27.

발 의 자 : 박용갑 · 문진석 · 조계원
이병진 · 윤종균 · 조승래
장종태 · 맹성규 · 전용기
황정아 · 최혁진 · 윤준병
안태준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항공사 직원이 항공기를 이용하는 유명인의 항공편, 좌석 위치 등의 정보를 유출하고, 불법적으로 거래된 정보를 스토킹 등에 활용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항공교통이용자 정보 유출로 인한 심각한 피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항공교통사업자 또는 종사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성 확보조치를 취하거나, 정보가 분실·도난·유출된 경우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지하고 국민에게 공개해야 할 법적 의무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피해 예방과 2차 피해 확산 방지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항공교통사업자가 항공교통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필요한 안전성 확보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 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즉시 통지하고 관련 사실을 공개하도록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항공교통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피해 확산 방지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64조의2 및 제84조제2항제20호의4 신설).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장에 제6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4조의2(항공교통이용자 정보 보호 및 침해사고의 통지 등) ① 항공교통사업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항공교통이용자 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항공교통사업자는 항공교통이용자 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즉시 그 사실을 통지하고 이를 항공사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84조제2항에 제20호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0의4. 제6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항공교통이용자 정보 침해사고를 통지하지 아니하고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신 설></u>	<u>제64조의2(항공교통이용자 정보 보호 및 침해사고의 통지 등)</u> <u>① 항공교통사업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항공교통이용자 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u> <u>② 항공교통사업자는 항공교통이용자 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즉시 그 사실을 통지하고 이를 항공사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u>
제84조(과태료)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20의3. (생략) <u><신 설></u>	제84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20의3. (현행과 같음) <u>20의4. 제6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항공교통이용자 정보 침해사고를 통지하지 아니하</u>

21. ~ 24. (생 략) ③ · ④ (생 략)	<u>고 이</u>를 공개하지 아니한 자 21. ~ 24. (현행과 같음) ③ · ④ (현행과 같음)
---	---